

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6. 9. 15.>

교통안전체험연구·교육시설의 시설·전문인력 및 장비(제31조제1항 관련)

1. 시설

가. 코스

종 류	용 도
고속주행코스	고속주행에 따른 운전자 및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
일반주행코스	중저속 상황에서의 기본 주행 및 응용 주행을 체험
기초훈련코스	자동차 운전에 대한 감각 등 안전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연수
자유훈련코스	회전 및 선회(旋回) 주행을 통하여 올바른 운전자세를 습득하고 자동차의 한계를 체험
제동훈련코스	도로 상태별 급제동에 따른 자동차의 특성과 한계를 체험
위험회피코스	위험 및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한계를 체험하고 위험회피 요령을 습득
다목적코스	부정형(不定形)의 노면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의 적재 상태가 운전 미치하는 영향을 체험

1) 각 코스는 고속주행, 급제동, 급가속 또는 선회 등을 할 때에 안전하도록 충분한 안전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.

2) 코스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정비시설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 기준에 맞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정비시설(다른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전문인력

가. 자격과 경력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

1) 「도로교통법」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강사 경력이 있는 자

2) 「도로교통법」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기능검정원 경력이 있는 자

3) 자동차의 검사·정비·연구·교육 또는 그 밖의 교통안전업무(정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만 해당한다)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

나. 교육·훈련과정: 국내 또는 국외의 교통안전체험 교육·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친 자

3. 장비: 「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 (ABS: Anti-Lock Brake System)를 장착한 자동차 및 이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동차, 그 밖에 교육·훈련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

가. 효율적인 교육·훈련의 시행과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교육·훈련용 자동차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나. 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 결과를 기록부로 작성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다. 교육·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및 구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